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0. 12. 8.
- 나. 회부일자 : 2000. 12. 1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00. 12. 2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자 : 청소행정과장 최 광 문)

가. 개정이유

-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후 청소관련 전반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를 폐지코자 함.
-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방침의 일환으로 지방조직의 감축을 위해 청소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마련

나. 주요골자

-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재산특례자 포함)”로 개정 (안 제24조)
-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조항 폐지 (안 제30조)
-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안 제3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 화 순)

-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행정의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 하였던 사무를 폐지하는 안으로 이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민의 집으로 전환되어 청소업무와 관련된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30조(권한위임)의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폐지하자는 사항임.
- 폐기물관리법 제58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제31조(업무의 위탁) 제1항 중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로 개정함은 청소업무의 위탁사항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

용품 분리 수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관급봉투 공급 등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로 확대하여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음.

따라서 본 안건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법규, 그리고 청소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소업무 위탁사항의 확대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시설과 폐기물 처리관련 업무인 재활용품 분리 수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관급봉투 공급 등 운영·관리의 지도·감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8. 기타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년 12월 일

제 출 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이후 청소관련 전반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를 폐지코자 함
- 지방행정의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지방조직의 감축을 위해 청소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 가.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재산특례자 포함)”로 개정 (제24조)
- 나.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조항 폐지 (제30조)
- 다.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제3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구사무위임조례
- 나. 입법예고(2000. 11. 6 ~ 11. 25) : 의견 없음

광주광역시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재산특례자 포함)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의”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수수료의 감면) ①(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1.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u></p> <p>제30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u>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투기 단속 및 미화원의 지도·감독</u></p> <p style="padding-left: 20px;">2. <u>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적정 배출지도</u></p> <p style="padding-left: 20px;">3. <u>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지도</u></p> <p style="padding-left: 20px;">4. <u>대형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징수</u></p> <p>제31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기타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②(생략)</p>	<p>제24조(수수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 수급자 (재산특례자 포함)</u></p> <p style="padding-left: 20px;"><삭 제></p> <p>제31조(업무의 위탁) ① ----- ----- <u>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의</u> ----- ----- -----</p> <p>②(현행과 같음)</p>


(별표 5)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제11조 관련)

19cm

이 봉투는 서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담은선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탄산칼슘) 첨가제가
30% 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쓰레기 봉투 (20ℓ)
-일반용-

모으면 자원 버리면 쓰레기

49cm

1.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은 매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사이 대문밖에 내놓으시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연락처 : 서구 청소위생과
(☎360-7335~6)

이 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 규격 제품임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명 (전화)

15cm 42cm

19cm

이 봉투는 서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담은선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탄산칼슘) 첨가제가
30% 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쓰레기 봉투 (20ℓ)
-공공용-

모으면 자원 버리면 쓰레기

49cm

1. 이 봉투는 공공용이므로 골목이나 도로변
등 공공장소를 청소한 쓰레기만 담아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가정용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공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연락처 : 서구 청소위생과
(☎360-7335~6)

이 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 규격 제품임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명 (전화)

15cm 42cm